

「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19년 군의 조직개편(국장제 도입)에 따른 정비로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변경
- 기획실장 → 경제건설국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

2019년 국장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

기존 기획실장에서 기업유치,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장인 경제건설국장을

기업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건설국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]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<u>1. 기획실장</u></p> <p><u>2. ~ 3. (생략)</u></p> <p><u>③ ~ ⑤ (생략)</u></p> | 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경제건설국장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